

계룡시조례 제 호

계룡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안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룡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위원5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문화과장이 된다.

③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제3조 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
2. 그 밖의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4조 (위원의 임기)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.

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5조 (위원장의 직무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그 회무를 총괄한다.

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 (회의)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.

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위원장은 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(제1항 및 제2항, 제3항의 회의를)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.

제7조 (수당 등)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계룡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 (간사와 서기) ①위원회는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둔다.

②위원회의 간사는 사회복지담당이 되고,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.

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.

제9조 (회의록)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2명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
제10조 (운영규정)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